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6-39호

「2026년 석계역 일대 간판개선사업」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0일

노 원 구 청 장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 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으로 노후·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 강풍·폭우·대설·해빙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정성 확보, 좁은 보행로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한 상권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정비시범구역 지정)

① 지정구역 : 석계역 일대 상가 및 골목시장(약 177개소, 39개동, 750m 구간)

② 위 치 도 : 별표 참고

제4조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1개 업소에 표시·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다음과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2개 이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 1개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각 목을 중복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나. 해당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주변·건물 또는 업소의 여건상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보다 추가로 필요하다고 노원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② 광고물의 형태·재질·색상은 업소의 특성에 맞게 사용하되, 주변 환경 및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 고채도의 원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포인트 색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형광 도료 또는 야광 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 포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빛의 점멸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건물 5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 하나의 입체형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에 대하여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입체형 간판의 가로크기는 해당 업소 폭의 80% 이내, 최대크기는 10m 이내로 표시·설치하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45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층의 경우 건물의 특성에 따라 판류형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로크기는 80cm 이내로 한다.

③ 건물의 외벽 훼손 방지 및 간판 교체가 용이하도록 입체형 간판은 게시틀을 설치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6조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돌출간판의 신규 설치와 연장허가(신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노원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돌출간판 1개를 허용할 수 있다.

가. 1면의 면적 : 0.36㎡ 이하

나. 두께 : 0.2m 이하

다. 업소를 상징하는 예술적 조형물일 것

②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돌출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각 업소당 1면의 면적 0.36㎡ 이하의 연립형 간판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 하나의 업소에 하나의 돌출간판만을 표시할 수 있다.

제7조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건물 3층 이하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 등에 자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30cm 이내의 띠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제8조 (광고물 심의 등)

건물의 특성 및 지역 여건상 법령·조례의 표시방법 및 설치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광고물별로 노원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제한·완화하여 표시·설치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일 이전 규정에 따라 표시하였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그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 (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별 표]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위치

석계역 일대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위치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대상 도로명 주소

화랑로 337, 화랑로 335, 석계로 2, 석계로 4, 석계로 6, 석계로 8, 석계로 8-1, 석계로 10, 석계로 12, 석계로 12-1, 석계로 14, 석계로 14-1, 석계로 16, 석계로 18, 석계로8가길 2, 석계로8길 6, 석계로7길 2, 석계로 21, 석계로 19, 석계로 17, 석계로 15, 석계로 13, 석계로 11-1, 석계로 11, 석계로 9, 석계로3길 8, 석계로3길 10, 석계로3길 16, 석계로3길 18, 석계로3길 20, 석계로3길 21, 석계로3길 17, 석계로3길 15, 석계로3길 11, 석계로1길 10, 석계로3길 3, 석계로1길 14, 석계로1길 18, 석계로1길 22